



노인학대  
NO!  
학대신고  
YES!

#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01



신체적  
학 대

02



정서적  
학 대

03



성적  
학 대

04



경제적  
학 대

05



방임

06



유기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거나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여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생긴 적이 있다.
-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억제대, 끈, 천, 수갑, 테이프 등)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제한된 공간에서 강제로 가두거나 격리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도구나 거친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 및 주사를 단절시킨 적이 있다.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한 적이 있다.
- 치료나 요양 목적 외의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한 적이 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억제대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나요?

생활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먼저 어르신의 심신의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합니다. 또한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통지를 하며, '비상응급시 각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적이 있다.
-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 노인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 다른 노인들이나 직원들 간에 공모하여 노인을 따돌린 적이 있다.
- 노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노인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며, 반말을 사용하거나 욕이나 화를 낸 적이 있다.
-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적이 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억지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서비스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어르신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감 및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성추행을 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 적이 있다.
-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 적이 있다.
-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나 기저귀 찬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노출시켜 놓은 적이 있다.
- 노인에게 옷을 입히지 않거나 성적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둔 적이 있다.
-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적이 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 서비스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치심을 줄여주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목욕서비스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이 신뢰하는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 기저귀를 갈 때는 커튼이나 이동식 스크린, 수건 등을 이용하여 가려줌으로써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어르신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이 있다.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노령연금)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 노인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적이 있다.
- 시설 내 대체인력이나 일자리, 부업 등에 참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다.
- 노인의 재산관련 문서(금융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하거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변경한 적이 있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현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물품강매 등)으로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어르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분실 위험이 있어 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금지하는데 어떡하죠?

어르신의 개인 소유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임 행위를 체크☒ 해봅시다.

-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노인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의복·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 둔 적이 있다.
-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하지 않거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적이 있다.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막다 남은(버린) 음식,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인 적이 있다.
- 냉·난방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감염, 안전사고, 화재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 적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 물품(의복, 침구, 위생용품 등) 및 보장구(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둔 적이 있다.
-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노인이 치료, 약 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한 상태를 목격하고 조치하지 않은 적이 있다(자기방임).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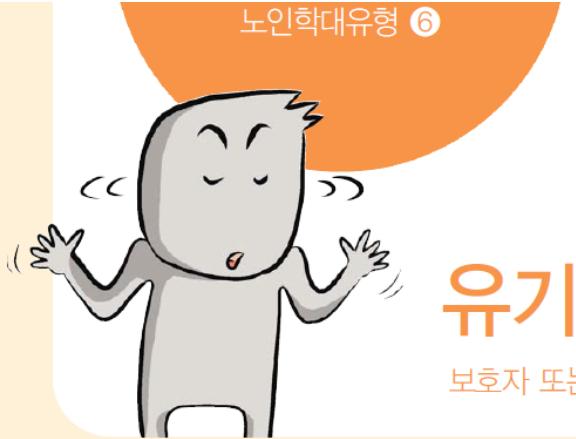
### Q 어르신이 혼자 있고 싶다 하시는데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방임 아닌가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혼자 시간을 가지게 할 때에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 어르신은 건강상태 악화 및 자존감 저하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가 장기간 지속될 시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인지 아닌지 특별히 살펴야 합니다.

### Q 야간에 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 어르신의 신속한 의료조치 및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장, 사무국장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 행위를 체크☒ 해봅시다.

-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 적이 있다.
-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 적이 있다.
-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은 적이 있다.
- 노인을 타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적이 있다.
-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기존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가족의 방문만 기다리는 어르신의 자녀들이 시설의 연락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어쩌죠?

종사자는 가족이 현재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르신께 설명드리고, 어르신이 보호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의 현재 상황을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동료어르신과의 교류와 소집단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人

## 나는 신고의무인

###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위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61조의2제2항).

#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④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⑥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⑦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